

배포 일시	2022. 9. 26.(월)		
담당 부서 <총괄>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2022년 9월 2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6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

- 화물차·버스·택시 등 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분 50% 지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화물차·버스·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「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」, 「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을 개정·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※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('22.5.1.~'22.12.31.)

- (지급 대상) 화물차, 버스(시내·시외·고속·마을버스), 택시 운수종사자
- (지급 기준) 경유가격이 기준가격(5월: 1,850원/ℓ, 6월: 1,750원, 7~12월: 1,700원/ℓ)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- (상한액) 리터당 183.21원/ℓ(='01.6월 유류세)
- * 경유가격: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(한국석유공사 오피넷(www.opinet.co.kr) 기준)

-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%를 지원하는 제도로,

-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·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
-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.6%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, 교통·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,

* 경유가격(원/ℓ) : (1Q) 1,608 (2Q) 1,986 (7월) 2,085 (8월) 1,889 (9.18) 1,859

○ 지난 9월 16일 **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**(기획재정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)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“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·버스·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* 대상: 화물차 44만대, 버스 2만대, 택시 5백대

담당 부서 <총괄>	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	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	(044-201-4018)
<공동>	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근오	(044-201-3993)
		담당자	사무관	유찬호	(044-201-3998)
<공동>	종합교통정책관 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경현	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	(044-201-3824)